[별표 1]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기준 및 선정 절차(제10조제1항 관련)

1.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말한다.

가. 최근 3년간 이 법 또는 영 제2조의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 또는 법 제13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신용점수제 이전 신용등급제의 경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개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대출(담보 또는 보증이 없는 대출을 말한다. 이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라 한다)의 잔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체 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율")이 70% 이상일 것

2) 잔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 3년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2.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선정 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호가목의 요건 및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 제1호의나목의1)과2)를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는 선정 후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만 충족하여도 가목 및 나목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선정 당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율이 70% 이상이었던 법인은 해당 비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나. 선정 당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었던 법인은 해당 잔액을 선정시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의 90%와 직전

반기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의 80% 중 최대값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차주의 만기연장 신청시 승인율을 선정 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라.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은행법」상의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금액의 잔액 이상일 것

3. 제2호 각목의 요건을 산정시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이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포함하여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 및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4. 금융감독원장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가 제1호가목 또는 제2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반기별 보고서 기준으로 2회 연속하여 제2호 각목의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금융감독원장은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연속하여 최대 2회까지 선정취소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가. 다음 각각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이행계획서 또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1호가목·다목 또는 제2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이 없는 경우

1) 선정 당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율이 70% 이상이었던 법인으로서 해당 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경우

2) 선정 당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었던 법인으로서 해당 잔액이 선정시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의 75% 이상

90% 미만이거나 직전 반기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의 65%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나. 기타 금융환경 및 제도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심각한 차질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선정 및 취소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한(1월 31일 또는 7월 31일)부터 다음달 15일(이하 "제출기한" 라 한다)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선정된 이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지요건 확인서를 반기별로 제출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을 해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금융감독원장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여부 및 취소 등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마. 금융감독원장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선정(취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경우 선정일(취소일) 직전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 면담, 실사 또는 필요

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바. 다목은 금융감독원장이 제4호에 따른 선정의 취소 또는 제5호에 따른 취소유예조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